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 공포, 2023. 11. 16. 시행)됨에 따라, 측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, 부과기준, 부과방법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,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16. ~ 7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”을 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”으로, “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제주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제46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(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

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47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97조제1항제5호 중 “지피에스(GPS)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”로 한다.

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의2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96조제5항에

다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.

제103조제1항제34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4.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,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

46.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제10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다.

제105조 중 “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4 장비란 제1호 중 “GPS수신기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 수신기”로 하고, 같은 란 제7호 중 “GPS데이터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 데이터”로 한다.

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, 공공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, 일반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, 연안조사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, 공간영상도화업의 장비란 제2호, 영상처리업의 장비란 제3호 및 지하시설물 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“GPS수신기”를 각각 “지엔에스에스(GNSS) 수신기”로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2 장비란 제1호 중 “GPS수신기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 수신기”로 하고, 같은 란 제11호 중 “GPS데이터”를 “지엔에스에스(GNSS) 데이터”로 한다.

별표 13 제1호가목 전단 중 “과태료의 부과기준”을 “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, “과태료를 부과받은”을 “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다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”를 “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“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”을 “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

료 금액”을 “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”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별표 비고 중 “위 표 제2호파목”을 “제2호다목”으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	법 제111조 제1항	60	120	230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	법 제111조 제2항제1호	40	75	150
다.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	법 제111조 제2항제2호	30	60	120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11조 제2항제3호	35	70	14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11조 제2항제4호	30	60	120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	법 제111조 제2항제5호	40	75	150

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				
사.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1호	8	15	30
아.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2호	13	25	50
자.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3호	60		
차.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4호	38		
카.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5호	10	20	40
타. 법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6호	30		
파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11조 제3항제7호	30	60	100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한다.

[별표 9]

등록취소 및 영업정지,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5조 및 제99조의2 관련)

1. 일반 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·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, 그 가중한 기간 또는 금액을 합산한 기간 또는 금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·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전체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1년 또는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는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 또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 또

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 기준

가.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1 차		2 차		3 차	
	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
1)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가)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나)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호	등록 취소 영업 정지 4개월	해당 없음 1천6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
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2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3)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3호	경고	해당 없음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4)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.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52조제1항 제4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5)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6호	영업 정지 3개월	1천2백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6)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52조제1항 제7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7)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8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8)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9호	영업 정지 1개월	4백만원	영업 정지 3개월	1천2백만원	등록 취소 또는	2천4백만원

						영업 정지 6개월	(영업 정지의 경우)
9)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0호	영업 정지 2개월	8백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 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10)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 여 영업을 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1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11)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 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2호	영업 정지 2개월	8백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 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12)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 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 소하게 받은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3호	영업 정지 3개월	1천2백 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 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
13)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를 요구한 경우 가)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나)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	법 제52조제1항 제14호	등록 취소 영업 정지 3개월	해당 없음 1천2백 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 만원	영업 정지 6개월	2천4백 만원
14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 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 인된 경우	제52조제1항 제15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
나.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1 차		2 차		3 차	
	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	처 분 기 준	과 징 금 금 액
1)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1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2)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1의2호	경고	해당 없음	업무 정지 1개월	1백만원	업무 정지 2개월	2백만원

3)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96조제1항 제2호	업무 정지 2개월	2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
4)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4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5)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5호	업무 정지 6개월	6백만원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
6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6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7)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7호	등록 취소	해당 없음				
8)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)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나)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	법 제96조제1항 제8호	등록 취소 업무 정지 3개월	해당 없음 3백만원	업무 정지 6개월	6백만원	업무 정지 6개월	6백만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측량업의 등록 등)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,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해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.	제35조(측량업의 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시·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<u>제주특별자치도지사</u>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45조(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

<신 설>

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제46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(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

<신 설>

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47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

및 분할 납부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97조(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)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 및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지피에스(GPS) 수신기: 3년

6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103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33. (생략)

제97조(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) ① -----

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지엔에스에스(GNSS) 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9조의2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96조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.

제103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---.

1. ~ 33. (현행과 같음)

34. <u>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실의 공고</u> 35. ~ 45. (생략) 46. <u>법 제111조제1항(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u> 47. ~ 60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제10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</u>	34. <u>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,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</u> 35. ~ 45. (현행과 같음) 46. <u>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</u> 47. ~ 6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방해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다.</u> <u>제10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----- ----- 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80